



금융감독원

보도자료



금융은 튼튼하게 소비자는 행복하게

보도	2026.1.13.(화) 조간	배포	2026.1.12.(월)		
담당부서	민생침해대응총괄국 불법사금융대응2팀	책임자	팀장	김수진	(02-3145-8285)
		담당자	조사역	김태기	(02-3145-8523)

"상장시 압박"이라며 비상장주식 매수를 권유한다면? 사기부터 의심! (주의 → 경고)

■ 소비자경보 2026 - 1호

등급	주의	경고	위험
대상	금융소비자 일반		

I 정보발령 배경

▶ (경보 등급 상향) 신속한 수사의뢰(25.9.1., 12.11.) 및 사기이용계좌에 대한 금융거래제한(25.12월) 조치에도, 새로운 대포통장을 이용하여 동일 유형의 사기 범행이 지속됨에 따라 경보를 상향↑

■ '25.6.18. 비상장주식의 "상장임박"을 미끼로 한 IPO 투자사기 관련 소비자경보 "주의*"를 발령하였으나,

* ('25.6.13.) 「비상장주식의 '상장임박'을 미끼로 한 IPO 투자사기 주의보 발령」

○ 최근까지 동일한 유형의 소비자피해 민원이 지속 접수됨에 따라 소비자경보 등급을 "경고"로 한 단계 상향합니다.

■ 특히, 금번 투자사기는 과장된 사업내용과 허위 상장 정보들로 현혹하는 동시에 상장 실패 시 재매입 약정을 통해 원금을 보장해준다는 금융소비자들의 기대 심리와 피해보상 심리를 이용하고

○ 투자자들에게 금융회사의 이상거래 탐지*(FDS) 모니터링을 회피하기 위해 본인 거래 확인 전화 시 답변할 내용(계약금·생활비 명목의 송금 등)을 사전에 지시하는 치밀함을 보이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.

* FDS(FRAUD DETECTION SYSTEM) : 금융회사는 고객 이체·해외송금·가상자산 출금 등 이상 거래로 의심될 경우 자금용도, 수취인 관계 등을 확인하여 거래제한 여부를 파악

< 소비자 유의사항 및 대응요령 >

- 1 상장임박으로 고수익이 가능하다는 비상장주식 매수를 권유하는 경우 사기부터 의심
- 2 제도권 금융회사는 1:1 채팅방, 이메일, 문자로 유인하여 개별적 투자권유를 하지 않음을 유의
- 3 비상장회사의 재무현황, 투자위험 등 사업 정보는 투자자가 직접 확인
- 4 인터넷 기사 등 온라인에서 접하는 모든 정보는 허위로 조작될 수 있음을 명심
- 5 불법금융투자로 의심되면 신속하게 신고(금융감독원☎1332, 경찰청☎112)

Ⅱ 최근 IPO 투자사기의 단계별 주요 행태

※ 금융감독원에 제출된 민원서류를 기반으로 작성

< 범행수법 >

① 비상장주식 사전 매집 (1,000@×100,000주)	② 불특정 다수를 리딩방 으로 초대 후 상장예정 주식을 나눠주며 수익 실현 경험을 제공	③ 허위상장 정보를 배포 하고 사전 매집한 비상장 주식을 주당 40,000원에 매도	④ 제3자로 위장하여 해당 주식을 60,000원에 매수하겠다고 접근	⑤ 투자자가 비상장주식을 추가 매수하면 이내 잠적 (다른 종목으로 ①부터 반복)

① (유인) 문자·SNS 등으로 불특정 다수를 불법 리딩방으로 초대

- 국내 소형 금융회사 또는 유튜브 투자 전문가를 사칭한 불법업체는 문자·SNS 등에서 무료로 “급등종목 추천” 등을 해주며 불특정 다수를 불법 리딩방으로 초대
- 신뢰 관계 형성을 위해 실제 상장예정 주식을 무료로 입고(1~5주) 해주며 소액의 투자 성공 및 출금 경험을 제공

② (현혹) 고수의 실현 및 허위 상장 정보 등을 유포하며 매수를 권유

- 매수를 권유하는 비상장주식에 대해 “상장 임박”, “상장 시 수배 수익” 및 “상장 실패 시 재매입 및 원금 보장” 등 고수의 실현과 투자위험이 최소화된 안정적인 투자라며 기대심리를 자극
- 동시에 블로그·인터넷 신문사 등에 조작된 IR 자료와 허위 상장 정보를 대량 게재하면서 투자자들을 현혹



* 마케팅 대행 업체 등을 통해 허위 홍보성 기사를 배포

Ⅲ 소비자 주의사항 및 대응 요령

① 상장기업 임박했다며 비상장주식 매수를 권유하는 경우 무조건 사기를 의심

- SNS 등에서 주식매수를 권유한다면 사전에 증권신고서 등의 공시 의무가 부여되므로 DART에서 공시서류가 조회되지 않으면 투자에 유의
- 한편, 상장 절차를 진행 중인 회사라면 사업과 관련한 내용 등은 공시자료*로 확인 가능

* 한국거래소 (kind.krx.co.kr) → IPO 현황에서 상장 예비심사 신청 내역 확인
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(dart.fss.or.kr) → 증권신고서 등 공시서류 확인

② 제도권 금융회사는 1:1 채팅방, 이메일, 문자로 유인하여 개별적으로 투자권유를 하지 않음을 유의

- 불법업체와 거래로 인한 피해는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피해구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, 사칭이 의심되는 경우 금융회사 고객센터에 연락하여 사실관계를 반드시 확인

③ 비상장회사에 대한 정보는 허위·과장된 정보일 수 있으므로, 회사와 사업의 실체에 대해 투자자가 직접 확인할 필요

- 비상장회사는 재무현황이나 사업구조, 투자위험 등에 대한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지 않으므로 투자자가 스스로 회사의 실체를 파악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

④ 인터넷 기사 등 온라인을 통해 접하는 모든 정보는 허위로 조작될 수 있음을 명심

- 소정의 사례비를 받고 불법업체가 원하는 대로 인터넷 기사 또는 블로그 게시글을 작성해주는 사례가 많음을 유의

⑤ 불법금융투자로 의심되면 신속하게 신고(금감원☎1332, 경찰청☎112)

- 신속한 신고를 통해서만 범죄수익 은닉을 방지하고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

☞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(<http://www.fss.or.kr>)

- ① (사이버 불법금융행위 제보) 인터넷상 불법 금융투자업자 광고 등 불법 대부광고, 불법 금융광고 등 제보·신고
- ② (불법사금융 개인정보 불법 유통신고) 유사수신, 고금리 수취, 불법 채권 추심 등 민생침해사범에 대한 신고

1) 금융감독원 홈페이지(www.fss.or.kr > 민원·신고)



2) '불법금융신고센터' 클릭

① 사이버불법금융행위 제보

민원·신고

민원·신고 +

분쟁조정정보 +

불법금융신고센터

- 사이버불법금융행위제보

- 이용안내
- **제보하기**
- 제보내역조회

② 불법사금융 개인정보 불법 유통신고

민원·신고

민원·신고 +

분쟁조정정보 +

불법금융신고센터

- 불법사금융 개인정보 불법 유통신고

- **제보 상담하기**
- 제보 상담내용 조회